

【 7 】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01. 1. 9

발 의 자 : 이충규의원외 1인

□ 발의이유

- 노인복지기금을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수령 등에 능동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함.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과 불일치 하는 관련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제명을 양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함.(안 제명).
- 나. 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금5억원 이상을 적립하여 2002년부터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, 기금적립액을 2005년까지 10억원 이상으로 조성하고, 2002년부터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년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노인 인구수의 증가,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수령 등에 능동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).
- 다.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.(안 제4조).
- 라. 기금은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하던 것을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혜택·관리도록 함.(안 제5조 제2항).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

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양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양주군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군수는 노인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양주군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 및 사용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2005년도까지 10억원 이상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

②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,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.

1. 대한노인회 양주군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회(읍·면분회, 경로당)지도육성

2.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
3. 충효·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
4.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
5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
6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등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
2. 양주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
3. 대한노인회 양주군지회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 1인
4.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1인

⑤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그 임기기간으로 하고,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위촉직 위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1.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
2.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
3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

제7조(위원회 기능 및 회의) ①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

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간사는 노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군수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되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양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
2. 기금출납원 : 노인업무 담당주사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
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
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기금지원대상, 지원신청 및 결정, 교부 및 정산, 장부의 비치, 지도감독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